#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98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서지영

김용태 · 정성국 · 김대식

서명옥 • 이인선 • 안철수

유상범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케이팝(K-POP)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작품을 함께 만드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이행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미 현행법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의뢰하거나 용역 이행 후에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의뢰 당시 약속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관련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4조의5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대등한"을 "문화예술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서면계약의 체결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5(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1.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화예술용역 수 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 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의2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예술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지원 중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약)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 -----문화예술용 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 대등한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 ----- 제1항 또는 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서면계약 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 의 체결 및 제2항-----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5(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문화예술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u>아니한</u>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용	역	수	행钅	슬	入	] 직	히	-フ]	ス	<u> </u>	대
등	한	입	장이	] ]	न	공	정	하.	세	계	약
을	체	결	하기	·]	아	·니	하	거ι	<u></u>	계	약
서.	의	내	용을	<u>)</u>	이	행	하	지	아	·니	한
<u>자</u>											

- 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예술 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 니한 자
- 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 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	<u>습</u> )
10]9	

아니한-----

1의3. ~ 4. (생 략)1의3. ~ 4. (현행과 같음)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